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량충당연한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운송사업용	2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2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년
	자동차대여사업용		1년
	플랫폼운송사업용		1년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3년
	자동차대여사업용		3년
	플랫폼운송사업용		3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3년